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

2016년 5월 20일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만든 ‘자치법규 기본안’을 근거로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나. 기존 총 16개 조항을 총 13개 조항으로 정비함.
- 다. 기존 별지서식 총 17호를 총 14호로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2. 26. ~ 2016. 3. 17.) 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60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체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

제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재산세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
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

(○ ○ 동)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 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택조사표		
주택실측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선박조사표						
전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주소		
현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주소		
선박 현황	소재지	종류	용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